

자립 역량 강화

NFOCUS 서비스 코드

자립 역량 훈련 8382

가정 내 자립 역량 훈련 9233

서비스 정의

자립 역량 강화는 장애가 있는 노인 및 성인과 아동(AD)을 위한 HCBS 면제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.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장애의 영향을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일상 생활 활동(ADL), 수단적 일상 생활 활동(IADL) 및 가정 관리 훈련을 제공합니다. 교육은 참가자의 집이나 커뮤니티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제공 조건

- A. 자립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참가자 평가 중에 확인되며 사람 중심 계획(PCP)에 포함됩니다.
- B. 평가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함께 별도의 자립 역량 강화 훈련 계획(ISBTP)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.
- C. ISBTP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 - 1. 자립 역량 강화 서비스와 관련된 참가자의 강점, 요구 사항 및 원하는 결과,
 - 2. 요구 사항과 원하는 결과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, 및
 - 3. 제공할 구체적인 훈련.
- D.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서면 계획과 월별 진행 상황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E. 이 서비스는 참가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자 단독으로 제공되거나 간병인(메디케이드 비급여 제공자)이 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F. 가능한 교육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 - 1. 옷 입기, 몸단장, 개인 위생, 수유, 보행, 배변 등 일상 생활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 자기 관리 및 일상 생활 활동.
 - 2. 일상 생활의 도구적 활동(IADL):
 - a. 전화 받기 및 다른 사람에게 전화 걸기 등 전화 사용,
 - b. 혼자서 식료품 쇼핑,
 - c. 식사 계획, 난방 및 음식 서빙,
 - d. 옷과 침구류 세탁,
 - e. 필요한 경우 리필, 올바른 복용법, 부작용에 대한 인식 등 의약품 관리,
 - f. 집 또는 아파트 청소,
 - g. 간단한 집 관리,
 - h. 자동차, 택시, 우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, 및
 - i. 자금 관리 및 청구서 납부.
 - 3. 도우미 고용 및 감독.

4. 건강 관리.
 5. 장애 관련 문제 해결 및 개인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.
 6. 사고 예방.
 7.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포함한 커뮤니케이션.
 8. 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리 방법, 가정 내 문제 해결, 주거지 이전 지원 등이 포함한 접근성.
 9. 각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참가자의 PCP에서 확인된 기타 교육.
- G. 교육은 참가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참가자의 현재 거주지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H. 참가자와 함께 거주하는 개인은 제공자로 승인되지 않습니다.
- I. 이 서비스는 실제 활동 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또는 간병인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개인 관리, 집안일, 동반자와 다릅니다.
- J. 이 서비스는 승인된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K. 자립 역량 강화는 성인의 날 서비스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.
- L. 자립 역량 강화는 다음의 경우 승인할 수 없습니다:
1. 이 교육은 참가자가 일반적인 교육 배경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인 경우.
 2. 공립학교 시스템 또는 재활 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경우.
 3. 교육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습니다:
 - a. 업무 습관, 업무 내성 또는 취업에 필수적인 직장 내 행동을 습득하기 위한 업무 적응 교육.
 - b.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교육.
 - c. 면허를 소지한 청각사, 보청기 딜러, 작업 치료사, 검안사, 물리 치료사, 언어 병리학자 및 기타 관련 의료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는 교육.
- M. 자립 역량 강화는 다음의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:
1. 참가자의 ISBTP에서 확인된 결과가 달성되었을 경우, 또는
 2. 측정 가능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

제공자 요구 사항

- A. 모든 면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
1. 메디케이드 제공자일 것,
 2. 네브래스카 행정법 및 네브래스카주 법령의 적용가능한 조항을 모두 준수할 것,
 3. 메디케이드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자 계약에 설명된 기준을 준수할 것,
 4. 요청 시 DHHS 교육을 이수할 것,
 5.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사용할 것,
 6. 허가될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,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것.
- B. 자립 역량 강화 제공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참가자 파일에 문서화된 참가자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.
 2. 참가자의 의료 및 개인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보합니다.
 3. 가족, 의사,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변화를 관찰하고 보고합니다.

4. 바람직하게는 공식화된 교육 방법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C. 자립 역량 강화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시설은 최소한 다음 환경 및 화재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1. 서비스를 받는 참가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설계,
 2.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와 가구,
 3.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작동,
 4.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,
 5. 인식하기 쉬운 출구 2개 이상;
 6. 계단, 경사로, 실내 바닥의 미끄럼 방지 표면 또는 카펫;
 7. 노출된 전기 코드 또는 가연성 물질의 부적절한 보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험 요소 없음,
 8. 모든 계단, 경사로 및 장애인용 욕실에 사용 가능한 핸드레일.
- D. 필수 제공자 기록 보관: 제공자는 각 참가자의 파일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관해야 합니다:
1. ISBTP 및 권장 변경 사항;
 2. 월별 진행 상황 보고서;
 3. 참가자의 주치의 이름, 그리고
 4. 활동 제한, 약물 복용, 투여 일정, 알레르기 또는 특수 식단 등 관련 의료 정보.

요금

- A. 요금은 공급자와 서비스 담당자(RD) 간의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개별 공급자 기준으로 설정됩니다.
- B. 요금은 매년 공급업체의 연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됩니다.
- C. 제공자는 참가자의 치료 요구가 증가한 경우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D. 요금 협상은 참가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, 제공자의 기술 수준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합니다.
- E. 요금은 제공자가 개인에게 청구하는 요금보다 높지 않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
- F. 서비스 빈도는 시간 단위 또는 발생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